

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019-103
----------	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거창군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·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및 대상을 정함(안 제2조)

1)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

2) 대상 : 주사무소의 소재와 회원의 주소가 거창군에 있는 스포츠클럽

나. 지원 사업을 정함(안 제3조)

1)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,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,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,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

다. 지원신청을 정함(안 제4조)

라. 지도·감독을 정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 150백만원 확보예정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9. 7. 2.~7. 22.

나) 예고결과 :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검토의견	처리결과
거창스포츠클럽 김진옥	○ 입법예고안 제2조(스포츠 클럽 지원) 제2항 지원범위에 대한 내용 - 이 조례의 목적은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「생활체육진흥법」의 스포츠 클럽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- 지원 범위는 예산(경비), 공공체육시설 및 인적자원(생활체육지도자)에 대한 내용도 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	○ 스포츠클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2030 스포츠비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 ○ 「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」 제4조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○ 법에서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, 보다 안정적인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지원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의 의견을 반영함	의견 반영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·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스포츠클럽 지원) ① 거창군수는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지원대상은 주사무소의 소재와 회원의 주소가 거창군에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한다.

제3조(지원 사업)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3.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
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지원신청)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한 차례 이상 보고를 하게 하고 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·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

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,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,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,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·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

나. 관련조문 : 조례안 제3조(지원사업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계
세출	군비	150	150	150	150	150	750

나. 관련 의견

국가시책과 생활스포츠 저변확대, 엘리트스포츠 활로 개척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하고자 함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(2020년 기준)

가.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: 150백만원

작성자 :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현 화